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내 안전인증 여부 확인 및 소비자 고지 의무화 >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27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국내 안전인증 여부 확인 및 소비자 고지 의무화 ..	2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준호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7. 29.
- (3) 회 부 일 : 2024. 7.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제품 중 일부가 중금속에 오염되거나 국내 허용 범위를 넘는 전자파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신체에 위해한 경우가 보고되고 있으나,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고지나 안내가 없어 구매자 개인이 제품의 안전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한편으로 물품의 판매를 의뢰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경우에도 그 사업이 영세하여 판매하려는 물품과 관련된 인증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됨.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제품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수입 시 필요한 인증 등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유해한 물품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국내 안전인증 여부 확인 및 소비자 고지 의무화

□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제품 등이 안전인증, 적합성평가 등 인증·등록을 하였는지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및 제20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② (생략) <u><신설></u>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재화등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등록 등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u>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생략)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u>제20조제</u>	② ----- <u>제20조제</u>

현행	개정안
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2항 및 제3항----- ----- -----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 등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¹⁾와 같은 인증·등록 등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어린이제품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
2.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을 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청약이 이루어지게 전까지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임.

- ☐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도 2/4분기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쇼핑 거래액 비중 >

(경상금액, 억원, %)

	소매판매액(A)	온라인쇼핑 거래액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B) ¹⁾	비중(B/A)
2022	6,255,518	2,111,236	1,552,633	24.8
2023	6,397,192	2,288,607	1,627,028	25.4
2022.1/4	1,483,468	504,567	380,170	25.6
2/4	1,573,292	519,010	381,851	24.3
3/4	1,582,960	529,774	382,001	24.1
4/4	1,615,798	557,886	408,610	25.3
2023.1/4	1,553,057	539,233	388,618	25.0
2/4	1,600,698	559,051	397,583	24.8
3/4	1,588,107	573,187	398,519	25.1
4/4	1,655,330	617,136	442,308	26.7
2024.1/4	1,565,250	597,294	423,648	27.1
2/4p	1,600,276	607,372	428,961	26.8

- 1) 「여행 및 교통서비스, 문화 및 레저서비스, 이쿠폰서비스, 음식서비스, 기타서비스 거래액」 제외
※ 자료: 통계청 2024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2024년 2/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통계 포함)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 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또는 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제37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5.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제68조·제69조에 따른 기술기준
6.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기술기준
7.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이와 함께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접 구매의 경우에도 전년 동분기 대비 25.6% 증가하는 등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임.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직접 구매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지역별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 >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A)	중국(B)	비중(B/A)
2021.1/4	1,193,768	283,120	23.72%
2/4	1,223,034	333,570	27.27%
3/4	1,248,833	350,357	28.05%
4/4	1,591,767	465,622	29.25%
2022.1/4	1,433,886	407,120	28.39%
2/4	1,477,039	513,251	34.75%
3/4	1,446,370	550,855	38.09%
4/4	1,588,061	636,131	40.06%
2023.1/4	1,506,454	609,579	40.46%
2/4	1,603,867	750,693	46.81%
3/4	1,607,873	801,585	49.85%
4/4	1,963,719	1,065,485	54.26%
2024.1/4	1,838,509	1,008,466	54.85%
2/4p*	2,014,931	1,237,319	61.41%

* p는 잠정치임.

※ 자료: 통계청 2024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2024년 2/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통계 포함) 재구성

- 그런데 최근 일부 해외 직접 구매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해외 직접 구매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²⁾.
- 이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국내 안전인증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유해한 제품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2) 「직구로 산 중국산 어린이용품 '발암물질' 범벅...알리·테무 '조심」 (뉴시스, 2024. 4. 30.)

□ 다만, 국내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등 국내 법령에 따른 안전인증 취득 의무가 있고, 판매업자 등은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제품을 판매 또는 판매중개 등을 할 수 없다는 점³⁾, 「전자상거래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어린이제품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
2.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

제20조(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사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의 금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 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또는 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제37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5.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제68조·제69조에 따른 기술기준
6.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기술기준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시 등에서도 통신판매업자는 KC 인증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직접 구매의 경우에는 해외 판매업자에게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7.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15호)

II. 일반원칙

6.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KC 인증정보는 KC 마크와 식별부호(인증번호, 신고번호 등)를 함께 표시하고, 별도의 식별부호가 부여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는 KC 마크 또는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에 따라 KC 인증이 면제된 품목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III.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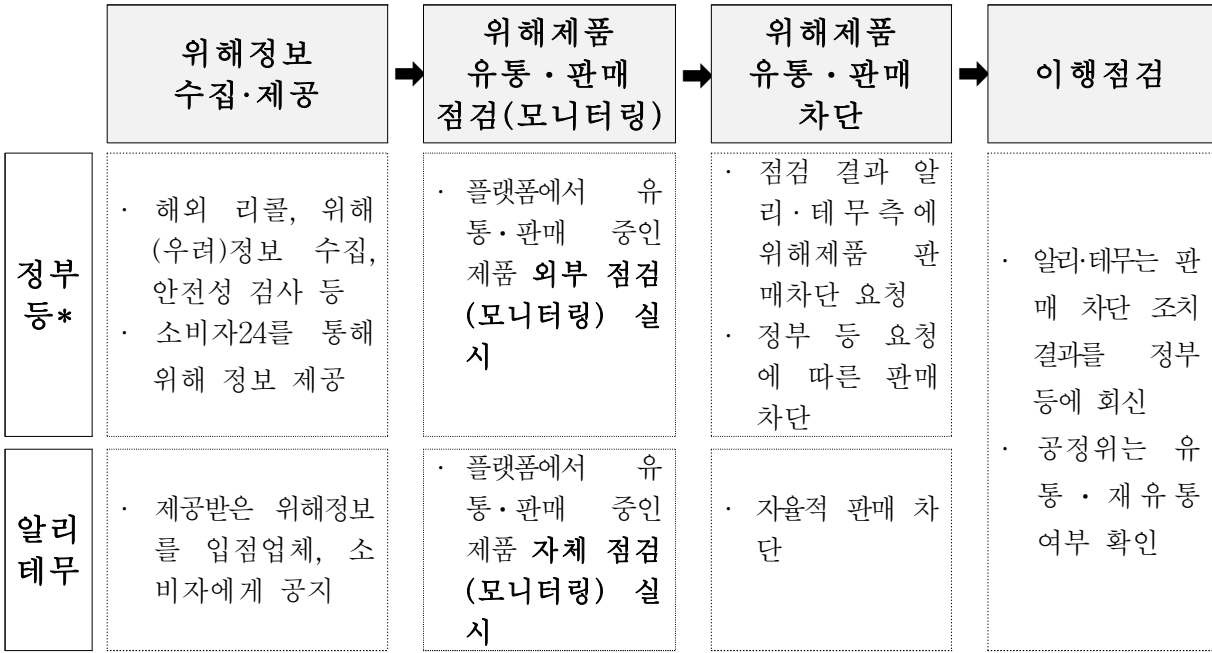
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예시) (8) 가정용 전기제품 (냉장고 / 세탁기 / 식기세척기 / 전자레인지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KC 인증정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 및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한함)	
3. 정격전압, 소비전력	
4.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대상 기자재에 한함)	
5.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6.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7. 제조국	
8. 크기, 용량, 형태	
9. 추가설치비용	
10. 품질보증기준	
11.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여 알리·테무 플랫폼에서의 위
해제품 유통·판매차단시스템을 마련한 바 있음5).

< 위해제품 유통·판매차단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



* 정부 등 : 공정위(소비자원),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서울시, 소비자단체 등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4. 5. 13.)

문 의 처

02)6788-5114

5)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 내용에 따르면, 유럽연합(이하 'EU'), 호주 등 해외*에서도 자율협약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판매 중인 위해제품을 차단하고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는 EU, 호주 정부 등의 위해제품 판매차단 요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함.

* (EU)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이베이 등 11개 사업자('18년~)

(호주) 알리바바그룹, 아마존, 이베이 등 5개 사업자('20년~)

** 정부 등 판매차단 요청의 자율시정율(2일 이내) : (호주) '22.7월~'23.6월 99.5%(2.2만건), (EU) '23.6월~'23.11월 86%(4.9만건) 위해제품 판매삭제 조치(출처: ACCC 제품안전협약 연차보고서, EU집행위 제품안전서약 이행경과 보고서)